#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**(전순애 의원 대표발의)**

| 의 안 번 호 | 2846 |
|---|---|

발의연월일 : 2026. 8. 19.
발의의원 : 전순애 의원,
김이석 의원, 이상봉 의원

## 1. 제안이유

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으로 상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 삭제됨에 따라, 현행 규칙 중 상임위원회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규칙 운영상 혼선을 방지하고 원활한 의회 운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

## 2. 주요내용

가. 청원의 본회의 회부 및 청원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정비(안 제6조제1항)

나. 본회의 또는 위원회 심사 절차 관련 조문 정비(안 제8조, 제9조, 제13조, 제16조)

## 3. 개정 규칙안 : “붙임”

## 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붙임

나. 비용추계서 : 비대상

대구광역시 달성군 의회규칙 제　　호

#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**제5조제2항 후단을 삭제한다.**

**제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**

**① 의장은 청원을 접수한 때에는 이를 인쇄하여 의원에게 배부하고 본회의에 회부하여 처리한다.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회의의 의결을 얻어 청원심사 특별위원회를 구성·회부할 수 있다.**

제8조제1항 및 제2항 중 “위원회”를 각각 “본회의 또는 위원회”로 한다.

제9조제1항 중 “의원”을 “의원 및 위원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“의원”을 각각 “의원 또는 위원”으로 한다.

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각호”를 “각 호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호 중 “회부”를 “회부한 경우”로 한다.

제16조 중 “의원”을 “의원 또는 위원”으로 한다.

**부　　칙**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신·구조문대비표

| 현 행 | 개 정 안 |
| --- | --- |
| **제5조(이의신청)** ① (생 략)<br>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청원을 접수 또는 처리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의장은 그 청원을 회부하거나 처리할 위원회(「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위원회 조례」에 따른 소관 상임위원회나 특별위원회 또는 제6조제1항에 따른 청원심사특별위원회를 말한다. 이하 같다.)의 위원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. | **제5조(이의신청)** ① (현행과 같음)<br>② ----------<br>----------<br>----------. 〈후단 삭제〉 |
| **제6조(청원서 회부와 심사)** ① 의장은 청원을 접수한 때에는 청원요지서를 작성하여 각 의원에게 인쇄·배부하는 동시에 그 청원서를 위원회에 회부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회의의 의결을 얻어 청원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·회부할 수 있다.<br>② ~ ④ (생 략) | **제6조(청원서 회부와 심사)** ① 의장은 청원을 접수한 때에는 이를 인쇄하여 의원에게 배부하고 본회의에 회부하여 처리한다.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회의의 의결을 얻어 청원심사 특별위원회를 구성·회부할 수 있다.<br>② ~ ④ (현행과 같음) |
| **제8조(청원인 등 진술)** ① 위원회는 청원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| **제8조(청원인 등 진술)** ① 본회의 또는 위원회---------- |

| | |
|---|---|
| 는 청원인, 이해관계인 및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에게 진술을 들을 수 있다. | ----------. |
|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참석한 사람에게 청원인을 제외하고는 「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」 및 「공무원 여비 규정」을 준용하여 여비와 일비를 지급할 수 있다. | ② ---------- 본회의 또는 위원회----------. |
| **제9조(제척과 회피)** ① 의원은 청원의 내용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, 공정하게 심사·의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청원의 심사·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. | **제9조(제척과 회피)** ① 의원 및 위원----------. |
| ②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의결로 해당 의원이 청원의 심사·의결에 참여할 수 없게 하고 다른 의원 하여금 심사·의결하게 하여야 한다. | ② ---------- 의원 또는 위원 ---------- 의원 또는 위원 ----------. |
| ③ 제2항에 따른 조치에 대하여 해당 의원의 이의가 있는 때에는 본회의가 의결하는 바에 따른다. | ③ ---------- 의원 또는 위원----------. |

| | |
|---|---|
| ④ 제1항에 따른 사유가 있는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그 청원의 심사·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. | ④ ---------- 의원 또는 위원----------. |
| **제13조(청원인에 대한 통지)** 의장은 다음 각호의 사실을 청원인에게 통지한다.<br>1. 청원접수 및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의 회부<br>2. ~ 6. (생 략) | **제13조(청원인에 대한 통지)** ---------- 각 호----------.<br>1. ----------회부한 경우<br>2. ~ 6. (현행과 같음) |
| **제16조(징계)** 청원을 심사·의결하는 의원이 제9조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음을 알면서 이를 회피하지 아니한 때에는 「지방자치법」 및 「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회의 규칙」 등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. | **제16조(징계)** ---------- 의원 또는 위원----------. |

**참고** **상위 및 관계법령(발췌)**

## □ 「지방자치법(법률)」(2026.3.5. 일부개정, 2026.7.1. 시행)

**제64조(위원회의 설치)** ① 지방의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② 위원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소관 의안(議案)과 청원 등을 심사·처리하는 상임위원회
2. 특정한 안건을 심사·처리하는 특별위원회

③ 위원회의 위원은 본회의에서 선임한다.

## □ 「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기본 조례(조례)」(2025.7.18. 제정, 2025.7.18. 시행)

**제25조(위원회의 설치)** 의회에는 법 제64조제2항에 따라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.